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88
----------	-------

제출년월일 : 2026.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추가 반영하고
-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완화 및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히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병역의무 이행 청년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50% 감면 신설(별표 2)
- 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법령 기준까지 완화하여 기업 애로 해소(안 제16조)
- 다. 전용주차구획 대상을 확대 및 단일화 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 제고(안 제10조)
- 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별표 5)
- 마. 기타사항 정비(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 수정 등)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바. 입법예고결과 : 【붙임 5】

○ 입법예고기간 : 2026. 1. 14. ~ 2026. 2. 3. (20일간)

사. 기타 참고사항

- 1) 현행조례 : 【붙임 6】
- 2) 방침결정문 : 【붙임 7】

【붙임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교부하는”을 “발급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따라 주택가 노상 등에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고,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노상에는 노동자 전용주차구획을”을 “따라 노상주차장 인근의 거주자, 상근자 또는 상인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이 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는 거주자 또는 노동자(이하 이 조에서는 “거주자”라 한다) 전용주차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 중”을 “설치하는 전용주차구획에는”으로, “없는 희망자에게”를 “없는 해당지역 희망자에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로, 같은 조 제3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는”을

“전용주차구획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을 “전용주차구획에는”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 전용주차장의”를 “전용주차구획의”로 같은 조 제6항 중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를 “전용주차구획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을 “해당”으로,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를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를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요청이 있는”을 “요청을 받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일”을 “날”로 한다.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철도건설교통국
입 안 자	교통정책과장	이 동 규
	주차장관리팀장	최 자 영
	담당자 (연락처)	이 삼 규 (031-481-2595)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분	30분 기본요금 (1회 주차 1구역 최초 30 분)	10분당가산요금 (30분 초과 시 10분마 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1 급지	6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2 급지	400원	200원	4,500원	50,000원
3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40,000원
4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20,000원

※ 화물차 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3급지에 준하며, 2.5톤 이상 4톤 미만은 주차요금의 2배, 4톤 이상은 주차요금의 3배를 부과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에 따름

-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주간 : 08:00 ~ 19:00
 - 야간 : 19:00 ~ 다음 날 08:0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 1급지 : 상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2급지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및 환승주차장(공업지역 제외)
 - 4급지 : 공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전용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 전일 30,000원으로 하며, 예외 사항으로 수암동 지역 전용주차장의 월 정기 주말·공휴일 주차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정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이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중 하나만 적용하되, 주차요금을 이용자 사정에 의하여 미납한 사람 및 체납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련 증서를 지니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

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지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바. 관계법령(조례를 포함)에 따라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경기도의 경우 유공납세자)임을 증명하는 표지(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사.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아.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차.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1) 우수자원봉사증: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2) VIP자원봉사증: 주차 후 1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

카.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의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주차 후 3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행복플러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하.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거.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6:00 ~ 22:00

9.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되,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0.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1.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한정하여 부과하며, 감면 적용은 입차 후 1회만 적용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 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3]

주차장 현황(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2	대림프라자앞주차장	고잔동 719
3	신천길앞주차장	원곡동 991-2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3	안산역환승주차장	원곡동 380-1
2	성포공원내주차장	성포동 593-14
3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초지동 670-12
3	월피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월피동 483-10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 시설면적 134㎡당 1대 2.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th> <th>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th> </tr> </thead> <tbody> <tr> <td>85이하</td> <td>1/85</td> </tr> <tr> <td>85초과</td> <td>1/70</td> </tr> </tbody> </table> <p>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p>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1. 그 밖의 건축물	1. 공장(아파트형) : 시설면적 150㎡당 1대 2. 공장(아파트형)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⑦ ~ ⑩ (생략)</p>	<p>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인정할 때에는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⑦ ~ ⑩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u>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u>감안하여</u>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2항에 따른</u>-----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고려하여</u>----- ----- ----- ----- -----</p>
<p>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2. (생략)</p> <p>3. 주차표를 <u>교부하는</u> 방법</p> <p>② ~ ④ (생략)</p>	<p>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발급하는</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u>따라 주택가 노상 등에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고,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노상에는 노동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u>설치하는 거주자 또는 노동자(이하 이 조에서는 “거주자”라 한다) 전용주차구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u>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u>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별표 2의 이용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u></u></u></p>	<p>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 <u>따라 노상주차장 인근의 거주자, 상근자 또는 상인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이 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라 한다)을 -----</u> -----.</p> <p>② ----- <u>설치하는 전용주차구획에는 -----</u> ----- ----- <u>없는 해당지역 희망자에게 -----</u> ----- <u>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u> -----.</p>

현행	개정안
<p>③ <u>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는</u> 주차구획 및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외 20,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u>전용주차구획에는</u> ----- ----- ----- ----- ----- ----- ----- -----.</p>
<p>④ <u>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u> 별표 1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u>전용주차구획에는</u>----- ----- -----.</p>
<p>⑤ <u>거주자 전용주차장의</u>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⑤ <u>전용주차구획의</u> ----- -----.</p>

현행	개정안
<p>⑥ <u>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u> 부정주차 금지 및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운영시간 내에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p>	<p>⑥ <u>전용주차구획에</u> ----- ----- ----- ----- -----</p>
<p>⑦ ~ ⑧ (생략)</p> <p>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u>제11조제1항</u> ----- ----- ----- ----- -----</p>
<p>② (생략)</p> <p>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 ----- ----- -----</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7.-----「철도건설법」 제2조----- ----- ----- ----- ----- ----- ----- -----</p>
<p>8.·9. (생략)</p> <p>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p>	<p>8.·9.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p>	<p>1. ----- ----- ----- <u>계산</u> <u>식</u>----- -----</p>
<p>2. (생략) ③ (생략)</p>	<p>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② (생략) 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u>기타</u>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그 밖에</u> ----- -----</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u>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인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u></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 ----- ----- <u>해당</u> ----- ----- <u>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u> -----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 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u>당해</u>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 무면제) ① ----- ----- ----- <u>해당</u> ----- ----- ----- ----- ----- ----- ----- ----- -----</p>
<p>②·③ (생략)</p> <p>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 ----- ----- -----</p>
<p>1. ~ 3. (생략)</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u>한국은행법</u>」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경우에는</u> ----- ----- 「<u>한국은행법</u>」 제86조 ----- ----- -----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② (생략)</p> <p>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p> <p>2. 3. (생략)</p> <p>④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 쉬운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①·② (생략)</p> <p>③ 부설주차장의 이용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제7조 별표 2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p> <p>④ (생략)</p>	<p>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고려하여 ----- -----.</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견인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월 정기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p> <p>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생략)</p>	<p>⑤ ----- 요청을 받은 ----- ----- ----- ----- ----- ----- ----- ----- -----</p> <p>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p> <p>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날----- ----- -----</p> <p>④ (현행과 같음)</p>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지 구분	30분 기본요금 (1회 주차 1구역 초 30분)	10분당가산요금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1 급지	6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2 급지	400원	200원	4,500원	50,000원
3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40,000원
4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20,000원

※ 화물차 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3급지에 준하며, 2.5년 이상 4분 미만은 주차요금의 2배, 4분 이상은 주차요금의 3배를 부과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1별표 11 최고지 주차요금에 따른다.

- 이 주차요금표는 별 제7조제1항 및 별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08:00 ~ 19:00
 - 나. 야간: 19:00 ~ 다음 날 08:0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1급지: 상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나. 2급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주거지역, 녹지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및 완속주차장(공영지역 제외)
 - 라. 4급지: 공영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기차역 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 전일 30,000원으로 하며, 예외 사항으로 수암동 지역 기차역 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공유일 주차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 전도 완속복합으로 완속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먼저 제2호시석의 도시철도 이용 확인증 또는 제2호시석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이종 갑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세율 또는 제각별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주차요금을 사용자 자정에 의하여 미납한 사람 및 제3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암산에서 발행한 자가를 부채 운영하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량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량자동차는 제외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리.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유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련 증서를 지니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관계법령(조례를 포함)에 따라 국제정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성년납생자(경기도의 경우 유급납생자)임을 증명하는 표지(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당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시·군·구별 주차정보시스템이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암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해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권이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 암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본인 또는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 1) 우수자원봉사증: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2) VIP자원봉사증: 주차 후 1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
- 「암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신산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후 3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암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생일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암산시 병역명부 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부카드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차니수가 두 자니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1-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 「암산시 장기돌봄 및 인제조직 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기돌봄 및 인제조직 기금자로서 등록기간이 만료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발급한 차량(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영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09:00 ~ 23:00
 - 다. 완속(역세권)주차장: 06:00 ~ 22:00
-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며,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공공임은 부료를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연정하여 부과하며, 감면 적용은 입차 후 1회만 적용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지 구분	30분 기본요금 (1회 주차 1구역 초 30분)	10분당가산요금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1 급지	6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2 급지	400원	200원	4,500원	50,000원
3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40,000원
4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20,000원

※ 화물차 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3급지에 준하며, 2.5년 이상 4분 미만은 주차요금의 2배, 4분 이상은 주차요금의 3배를 부과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1별표 11 최고지 주차요금에 따른다.

-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08:00 ~ 19:00
 - 나. 야간: 19:00 ~ 다음 날 08:0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1급지: 상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나. 2급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주거지역, 녹지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및 완속주차장(공영지역 제외)
 - 라. 4급지: 공영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 기차역 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20,000원, 야간 15,000원, 전일 30,000원으로 하며, 예외 사항으로 수암동 지역 완속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공유일 주차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 전도 완속복합으로 완속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먼저 제2호시석의 도시철도 이용 확인증 또는 제2호시석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이종 갑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세율 또는 제각별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적용하며, 주차요금을 사용자 자정에 의하여 미납한 사람 및 제3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암산에서 발행한 자가를 부채 운영하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량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량자동차는 제외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유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련 증서를 지니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관한 증서를 지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바. 관계법령(조례를 포함)에 따라 국제정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성년납생자(경기도의 경우 유급납생자)임을 증명하는 표지(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당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사. 시·군·구별 주차정보시스템이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암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해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권이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 암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본인 또는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 1) 우수자원봉사증: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2) VIP자원봉사증: 주차 후 1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
 - 「암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신산부의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주차 후 3시간까지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은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암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생일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암산시 병역명부 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부카드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차니수가 두 자니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1-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 「암산시 장기돌봄 및 인제조직 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기돌봄 및 인제조직 기금자로서 등록기간이 만료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발급한 차량(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암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 확인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영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09:00 ~ 23:00
 - 다. 완속(역세권)주차장: 06:00 ~ 22:00
 -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며,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공공임은 부료를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연정하여 부과하며, 감면 적용은 입차 후 1회만 적용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3]

주차장 현황(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2	대림프라자앞주차장	고잔동 719
3	신천길앞주차장	원곡동 991-2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3	안산역환승주차장	원곡동 380-1
2	성포공원내주차장	성포동 593-14
3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초지동 670-12

[별표 3]

주차장 현황(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2	대림프라자앞주차장	고잔동 719
3	신천길앞주차장	원곡동 991-2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3	안산역환승주차장	원곡동 380-1
2	성포공원내주차장	성포동 593-14
3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초지동 670-12
3	월피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월피동 483-10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공청 등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풍수시설, 의료시설(경신병원 요양 병실 및 재활병실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휴식연습장 및 복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애인식당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후 및 사후는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 시설면적 134㎡당 1대 2. 숙박시설 중 영구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여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차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견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세대당 전용 면적(제곱미터)</th> <th>주차대수(대)</th> </tr> <tr> <td>(간편면적 제외)</td> <td>(간편면적 제외)</td> </tr> <tr> <td>20㎡이하</td> <td>1/5</td> </tr> <tr> <td>20㎡초과</td> <td>1/3</td> </tr> </table> * 1호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주택구축 중 소수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세대당 전용 면적(제곱미터)	주차대수(대)	(간편면적 제외)	(간편면적 제외)	20㎡이하	1/5	20㎡초과	1/3
세대당 전용 면적(제곱미터)	주차대수(대)								
(간편면적 제외)	(간편면적 제외)								
20㎡이하	1/5								
20㎡초과	1/3								
6. 골프장, 골프연습장, 복외수영장, 관탕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복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탕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원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1. 그 밖의 건축물	1. 공장(아파트형) : 시설면적 150㎡당 1대 2. 공장(아파트형)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공청 등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경신병원 요양 병실 및 재활병실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휴식연습장 및 복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애인식당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후 및 사후는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1. 시설면적 134㎡당 1대 2. 숙박시설 중 영구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 로 하여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견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 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세대당 전용 면적(제곱미터)</th> <th>주차대수(대)</th> </tr> <tr> <td>(간편면적 제외)</td> <td>(간편면적 제외)</td> </tr> <tr> <td>20㎡이하</td> <td>1/5</td> </tr> <tr> <td>20㎡초과</td> <td>1/3</td> </tr> </tabl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기별 건립주택 또는 단기를 다세대주택 중 주택 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같이 되도록 한다.	세대당 전용 면적(제곱미터)	주차대수(대)	(간편면적 제외)	(간편면적 제외)	20㎡이하	1/5	20㎡초과	1/3
세대당 전용 면적(제곱미터)	주차대수(대)								
(간편면적 제외)	(간편면적 제외)								
20㎡이하	1/5								
20㎡초과	1/3								
6. 골프장, 골프연습장, 복외수영장, 관탕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복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탕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원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1. 그 밖의 건축물	1. 공장(아파트형) : 시설면적 150㎡당 1대 2. 공장(아파트형)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별표 10]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 반 경 도	기 본 과 경 금	가 감 후 과 경 금	해당법조문
1. 노의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할 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6조 제1항
	1회 이상 시정명령 미이행시		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의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17조 제2항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3. 노의주차장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할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23조 제3항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만원	
4. 노의주차장의 시선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25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는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별표 10]

<삭제>

□ 부대의견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인적 정보 기반으로 할인 적용되는 제도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운영 방식과 결합될 경우 감면 대상자와 실제 혜택을 이용하는 자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주기적 이용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